KOREA CUSTOMS SERVICE

과세가격 신고 제도 개편 안내

1. 「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」 도입
2. 가격신고서 서식 개정

※ 상세 자료 확인

관세청

1 「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」 도입

〈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 〉

1 과세자료 제출 생략

» 납세협력 프로그램 참여 기업(AEO, ACVA)

- AEO :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
- ACVA :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 물품

» 납부세액 연 5억원 미만 기업

- 납부세액 확인 방법 : 유니패스(unipass.customs.go.kr) ⇨ 정보조회 ⇨ 자사실적 ⇨ 수출수입 환급 납세실적 ⇨ '제세납부실적' 조회(전년도 1년)

※ 과세가격 신고는 종전과 같고, 자료 제출만 생략

2 최초 수입 건만 과세자료 제출

» 같은 판매자와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 시 연 1회 제출

- 다른 품목이라도, 동일 과세자료(계약서, 내역서 등)로 입증되는 경우 '같은 조건'으로 간주

3 과세자료 제출 목록 구체화

» 수입 거래 형태별, 과세자료 제출대상 규정 ⇨ 8개분야

- ①권리사용료, ②생산지원, ③수수료, ④운임 · 보험료, ⑤용기 · 포장비용, ⑥사후귀속이익, ⑦간접지급금액, ⑧특수관계자 거래

※ 8개 분야에 해당하지 않을 시, '미제출 사유서' 제출

4 과세자료 사후 제출 허용(30일)

» 기업의 과세자료 준비 기간 확보 ⇨ 신속 통관 지원

※ 가격신고 시 '지연 제출 사유서'를 제출하고, 통관 후 30일 이내 과세자료 제출

예시 1 글로벌 브랜드 기업

예시 2 다국적 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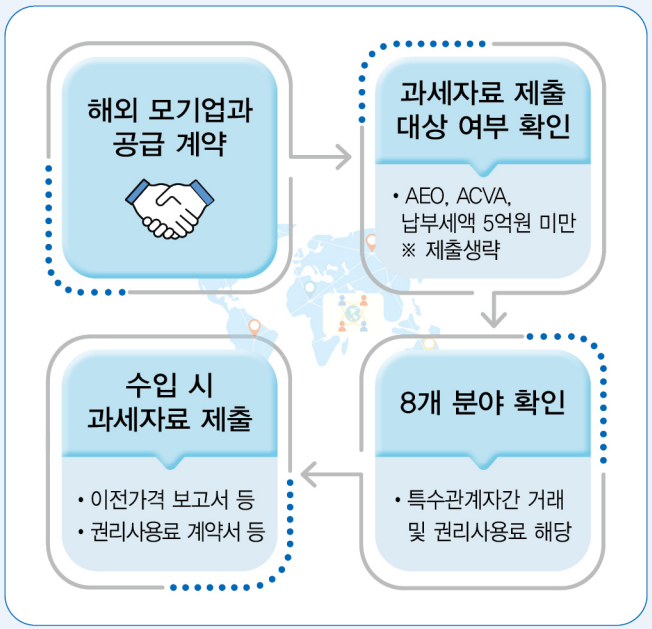

과세자료 미제출, 이렇게 관리합니다.

세관장이 통관 후 자료 제출 요구

※ 30일 이내 제출,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한 차례 연장(30일) 가능

미제출 시 조치 가능

❶ 월별납부업체 승인 취소
❷ 담보제공 생략 중지 ❸ 관세조사 또는 세액심사
❹ 기타 관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조치

2 가격신고서 서식 개정

〈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 〉

☑ 주관적 판단을 객관적 사실확인으로 변경

» 특수관계자 관련 판단 문항 삭제

7. (c) 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까? (삭제)
7. (d) 거래가격이 관세법시행규칙 제5조의 비교가격에 근접합니까? (삭제)

» 특수관계자 간 수입가격 결정방법 문항 신설

8. (d) [수입가격 결정방법]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결정방법은 무엇입니까?
   ① 국내판매가격 (표준판매가격 · 평균판매가격 · 순판매가격 등) × (1−할인율 · 재판매마진율)
   ② 국내판매가격 (표준판매가격 · 평균판매가격 · 순판매가격 등) − 목표매출이익 (− 운임 · 관세 등)
   ③ 제조원가 (표준원가 · 제3자구매가격 등) × (1+Mark up율)
   ④ 제조원가 (표준원가 · 제3자구매가격 등) × 계수
   ⑤ 기타 (상세 결정방법 입력)
   (위 질문에 관련된 증빙자료를 별도 제출하시오.)

☑ 과세자료가 첨부된 당해 연도 최초 수입신고 번호를 기재하도록 신설

7. 과세자료가 첨부된 최초 수입신고번호「 」